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6
------	----

2014. 9. 25.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5일,
김현아·김혜련의원(찬성의원 29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4. 9.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현아 의원)

가. 제안이유

-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어 따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가치 실현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성장의 한계와 고용불안 등 기존 경제구조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있음.

나. 사회적경제 환경의 변화와 추진노력

-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지연과 수출이익의

대기업 독점, 사회양극화, 자영업 몰락, 비정규직 증가, 마을공동체 약화와 사회안전망 취약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이하 “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모두 1,85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음¹⁾.

〈표 1〉 서울시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현황(2014년 6월말 기준)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계	서울형	지역형	인증		
1,851	364	31	117	216	116	1,371

-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 중 0.5%인 사회적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까지 늘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를 1만 7,6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음(2014.4.10., 경제비전 2030 -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 그 동안 시는 사회적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허브의 조성, 성장 단계에 따른

1)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12개의 인증사회적기업, 1,045개의 마을기업, 3,210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운영중임.

경영컨설팅, 사업비와 공간 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확대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왔음.

-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시장활성화와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표 2〉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실적 현황	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13년 실적	622	115	403	104
‘12년 실적	440	89	276	75
‘11년 실적	116	6	69	41
‘10년 실적	44	2	42	-

다.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지원(안 제16조제4항 신설)

- 사회적경제 분야의 가치와 필요성에 주목한 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의 이해확대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실제 지난해 7,3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전문인력 양성,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의 분야 교육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도 연말까지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임직원, 일반

시민 7,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중에 있음.

- 안 제16조제4항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대상을 초중등 교육으로까지 확대·지원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함.
- 주로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가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활발하게 논의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2)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를 명시하는 등 사회적경제분야의 활성화와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이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의 실시방안이나 내용, 실제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 개발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2) 현재 국회에는 유승민의원 대표발의로 2014년 4월 30일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관련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
----------	-------

제안년월일 : 2014년 9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육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지원범위를 관련 조례의 조항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지원의 범위를 제한함(안 제16조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4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 “경비를”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u><신설></u></div>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u>비용</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u>경비</u> 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생략> <신설></p>	<p>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